# 【2016 건축설비산업기사 과년도 정오표】 [2016.2.11]

**※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**

| 페이지 | 교정전 | 교정후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527 | 다중이용건축물 정의...<br>문화 및 집회 시설(전시장,동·식물원) | ①문화 및 집회 시설(~~전시장~~,동·식물원) | 전시장 삭제 |
| 527 | 신설 추가 | 준다중이용건축물 ☞ 하단참조 | 법 신설(정의) |
| 533 | [표]속 2. 연면적: 1,000㎡ | 연면적 : 500㎡ | 법 개정(※500㎡ 주의) |
| 537 | 3)배연설비 | ☞ 하단참조 | 법 개정(대상 추가) |
| 538 | [표]속 최하단에 한줄 추가 |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<br>/호실간 경계벽 ☞ 하단참조 | 법 개정(대상 추가) |
| 555 | 3)배연설비 | ☞ 하단참조 | 법 개정(대상 추가) |
| 561 | [표]속 | ☞ 하단참조 · 준다중이용건축물 | 법 개정(대상 추가) |
| 564 | 4. 1)이코노마이저시스템...중에서<br>~실내기준온도보다~ | 실내~~기~~준온도보다→실내엔탈피보다 | |
| [과년도기출] | 과년도기출 법규문제 중<br>구조안전확인 대상 | 연면적 ~~1,000㎡~~ → 500㎡ 으로 수정 | 법 개정(※500㎡ 주의)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위의 내용 이외에 의문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www.inup.co.kr 건축설비기사 동영상강좌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# ☞ 하단참조 내용

**[건축법규 개정,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!!]**

☞ 527p 신설 내용추가

**※ 준다중이용 건축물**

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위락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건축물

☞ 537p, 555p 수정부분(동일)

3) 배연설비

1.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것의 거실

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㎡ 이상인 공연장, 종교집회장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),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,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은 제외),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

[예외] 피난층인 경우

2.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

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,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·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

[예외] 피난층인 경우

☞ 538p 수정부분

① 경계벽 및 칸막이벽 구조

| 대상 건축물의 용도 | 구획 부분 | 구조 제한 기준 |
|---|---|---|
| • 다가구주택<br>•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| 각 가구간 또는 세대간의 경계벽<br>(발코니 부분은 제외) | 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 |
| • 학교의 교실<br>• 의료시설의 병실<br>• 숙박시설의 객실<br>• 기숙사의 침실 | 각 거실간의 칸막이벽 | |
|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| 호실 간 칸막이벽 | |
| •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| 세대 간 경계벽 | |
| •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| 호실 간 경계벽 | |

☞ 561p 수정부분

| 관계전문기술자 | 건축물의 규모 | 용도 및 협력사항 |
|---|---|---|
| 건축구조기술사 | • 6층 이상 건축물<br>• 특수구조 건축물<br>• 다중이용 건축물<br>• 준다중이용 건축물<br>•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| 구조안전의 확인 |